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121159 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운

담당변호사 임종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태기

변 론 종 결 2022. 1. 27.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7.부터 2022. 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409,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은 소외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실시한 ‘D 아파트’에 포함된 건물로서, 원래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은 시공사 E 주식회사(이하 ‘E’)가 F에게 분양하기로 한 건물이었다.

나. F은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중도금 2억 원을 주식회사 G(이하 ‘G’)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2. 5. 17.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소외 공사’)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막상 재건축이 완료되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30. 접수 제48174호로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같은 법원 2014. 7. 30. 접수 제48216호로 H 명의의 2014. 7. 30.자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같은 법원 2014. 9. 5. 접수 제56688호로 근저당권자를 I, 채권최고액을 12억 원, 채무자를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같은 법원 2014. 9. 18. 접수 제58668호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4. 9. 17.자 처분금지가처분결정(같은 법원 2014카합965, 가처분채권자 소외 공사의 업무수탁기관 G)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⑤ 같은 법원 2015. 2. 11. 접수 제9403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억 800만 원, 채무자를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⑥ 같은 법원 2015. 6. 24. 접수 제48961호로 2015.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⑦ 같은 법원 2016. 4. 22. 접수 제22372호로 2016. 4. 20.자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은 1,500만 원이었다.

라. 그 후 2015. 8. 17. 위 ③과 관련한 근저당권자인 I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공동담보인 D아파트 K호, L호, M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2016. 8. 2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위 다.항 등기 중 ③, ④, ⑤, ⑦ 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그 후 위 경매법원은 배당을 실시하여 2016. 10. 21.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권리자인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을 129,409,111원으로 정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소외 공사가 원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위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231호)을 받는 바람에 원고가 실제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바. 한편 F의 G에 대한 위 나.항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소외 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2362호로 F, 소외 조합, E, H, I,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8. 3. 16. 제1심 법원은 소외 조합과 H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탁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가액배상으로 소외 조합에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인 129,409,1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사. 또한 소외 공사는 원고를 상대로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714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17.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조합과 H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 또한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위 바, 사.항의 각 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각각 선의의 전득자 항변을 하였으나 배척되었으며, 위 소송 결과 원 · 피고 모두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기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근저당채무자인 E에 변제 자력이 없는 사실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그가 제1의 사.항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결국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공사에게 피고의 가액배상채무를 이행한 셈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채권 129,409,111원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상권이란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출연으로 최종 의무자 또는 선순위 의무자(이하 ‘주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위 변제자가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여기에는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 약속어음의 배서인과 같이 본래 위 채무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구상권에 관한 개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떠한 사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 또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 · 피고는 제1의 바, 사.항 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이른바 전득자로서 각각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였을 뿐이므로, 원 · 피고 사이에 어떠한 구상관계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제2전득자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제1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의 변제’로 해석할 수 없다).

4) 그밖에 원고가 구상권의 발생근거에 관하여 다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당초 재산 취득이 유상행위로 인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민법 제576조를 유추하여 자신의 전자(前者)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즉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가로 1,500만 원으로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나 제1의 사.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민법 제576조의 구성요건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67조 제1항을 유추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위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같은 제3항을 유추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다만 원 · 피고 모두 위 사해행위에 관하여 악의인 이상(제1의 아.항) 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자기가 이행한 반대급여 또는 그 가액의 범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으로 채권양도대금인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5.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O에 있는[도로명 주소 서울 성동구 P] D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층 2,315㎡

1층 751.27㎡

2층 내지 6층 각 756.01㎡

7층 749.04㎡

8층 627.23㎡

9층 583.16㎡

10층 554.0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1.5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성동구 O 대 2,922.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922.6분의 43.5 끝.

